

망마국민체육센터 신구대조문

현행	개정안
	<p>제 2조(회원)<신설></p> <p>① 망마국민체육센터(이하 “체육센터”)의 회원구분은 강습회원(일반강습반, 어린이반, 실버반, 아쿠아로빅반), 자율연수반, 월권 자유수영, 일권 자유수영 회원으로 구분하며, 강습회원에 대한 개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일반강습반(초급·중급·고급·아쿠아로빅반) : 만 13세 이상 67세 이하의 여수시민 2. 자율연수반 : 여수시민으로서 해당 시간대 고급반을 수료하고 1개월 이상 강습을 마친 회원 3. 어린이반 : 초등학교 학생 또는 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여수시민 4. 실버반 : 만 65세 이상의 여수시민 5. 자유수영반 : 대상 및 강습기간 제한 없음 <p>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적·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일반 수영강습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 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.</p>
	<p>제 3조(회원가입신청)</p> <p>강습회원 및 월권 자유수영회원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작성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회원가입 신청은 공단에서 지정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<신설> 2.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시 강습반은 1개 반, 강습시간은 1회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.<신설>

현행	개정안
<p>제 10조 1항(회원가입신청)</p> <p>1. 회원가입은 채용센터 소정의 신청에서 작성 제출하며,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으며,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수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</p> <p>제 10조 3항(회원가입신청)</p> <p>3. 회원가입신청서 기재 내용이 다르거나,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 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한다.</p>	<p>3.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시 이용수칙 서약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4. 회원가입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 시, 또는 변경된 연락처를 안내데스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작성자(회원)에게 있다.</p> <p>5.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희망시간대의 대기자 후순위로 접수된다. 단, 강습 중인 회원은 대기자 후순위 등록이 불가하다. <신설></p> <p>6. 대기자의 권한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 <신설></p>
<p>제 13조 4항(등록)</p> <p>④ <u>강습반 운영상 등록기한내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, 단 부득이한 경우 발생시 최소</u></p>	<p>제 4조(회원등록)</p> <p>① 등록 통지의 방법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의하며, 등록된 연락처로 발송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.<신설></p> <p>② 회원등록은 등록기한 내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, 미등록시 등록포기자로 간주되고 대기자 명단에서 삭제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<u>강습시작일 전일까지는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 10조 3항(회원가입신청)</p> <p>③ 회원가입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설에 내방하여 접수 또는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접수는 반드시 이용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.</p> <p>제 5조 5항(권리와 의무)</p> <p>⑤ 회원증(카드)은 타인에게 양도, 양수가 불가하며, 분실 시 즉시 <u>체육센터에</u> 통지 및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.(재발급 수수료 2,000원을 분실자가 부담한다.)</p>	<p>③ 회원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지참 후 이용료 결제를 완료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월권 자유수영 회원등록은 상시 가능하다. 단, 동시간대 이용객 현황에 따라 즉시 이용이 아닌 대기접수로 전환할 수 있다. <신설></p> <p>⑤ 회원증(카드)은 타인에게 양도, 양수가 불가하며, 분실 시 즉시 <u>수영장에</u> 통지 및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.(재발급 수수료 2,000원은 분실자가 부담한다.)</p>
<p>제 12조 4항(강습)</p> <p>④ 강습반별 탈의실 입장시간은 <u>강습시작 20분 전에</u>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제 12조 3항, 6항(강습)</p> <p>③ 반별 강습시간은 배정시간 매시 00분 부터 <u>50분</u>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.</p>	<p>제 5조(강습)</p> <p>① 탈의실 입장시간은 자유수영 시작시간 20분전부터 종료시간 20분 전 까지이며, 수영장 내 입장은 자유수영 시작시간 10분 전 부터로 한다.</p> <p>② 반별 강습시간(자유수영포함)은 배정 시간 매시간 5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,</p>

현행	개정안
<p>⑥ 모든 회원은 본인의 <u>강습이 종료되면 다음 강습을 위해 지체 없이 퇴장한다.</u></p> <p>제 17조 2항(시설이용)</p> <p>② 회원의 시설이용은 영업시간 내 당해 프로그램에 한해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제 17조 3항(시설이용)</p> <p>③ 해당 강습시간 불참자가 타 시간 이용은 <u>자유수영 시간(샤워포함)에 한해 가능할 수 있다.</u></p>	<p>50분경과 시 지체 없이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.</p> <p>③ 회원의 시설이용은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, 1회 이용 시 강습 및 자유수영 포함 2시간을 넘을 수 없다.</p> <p>④ 해당 강습시간 불참자가 타 시간을 이용할 경우 <u>자유수영에 한해</u> 이용할 수 있다.</p> <p>⑤ 강습반 회원은 강습반 및 강습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.<신설></p> <p>⑥ 제 5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강습반 및 강습시간의 대기자 후순위로 대기할 수 있다.<신설></p>
<p>제 11조 1항(사용료)</p> <p>① 이용료는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를 따른다.</p> <p>제 11조 2항(사용료)</p> <p>② 이용료는 <u>현금 일시납과 신용카드</u>로 선납하며 신용카드는 1개월 또는 3개월로 일시 또는 분납할 수 있다.</p>	<p>제 6조(이용료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이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, 회원의 경우 3개월분까지 선 결제 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 14조(사용료 반환)</p> <p>① 회원이 등록이후 강습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이용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용료 반환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재난, 재해 등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<u>정지기간의 사용료 전액 반환한다.</u></p> <p>3. 강습 시작 후 <u>사용료 반환 시 10% 위약금 공제</u>와 사용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를 공제 후 반환한다.</p> <p>② 제1항 제3호에 의한 사용료 반환 시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사용료를 <u>30일로</u> 계산한다.</p> <p>③ <u>사용료 반환은 본인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</u> 직접 체육센터를 방문하여 환불신청서를 작성하고 기 발급된 회원증(카드)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</p>	<p>제 7조(이용료 반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재난, 재해 등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<u>위약금 없이 정지기간의 이용료 전액 반환</u></p> <p>2. 자유수영 회원기간 중 강습회원으로 전환될 경우 <u>위약금 없이 사용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공제 후 반환<신설></u></p> <p>3. 강습시작 후 <u>이용료 반환 시 총 결제금액의 10% 위약금</u>과 사용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를 공제 후 반환</p> <p>4. 제 1항 제 2호 및 3호의 경우 <u>환불신청 당일의 공제여부는 출석유무를 판단해 미출석자일 경우 사용 취소일은 포함시키지 않는다.<신설></u></p> <p>② <u>제 1항에 의한 공제금액 산정은 다음과 같다.<신설></u></p> <p>1. 위약금 공제: 이용이 개시된 달의 결제금액 × 10%</p> <p>2. 이용일수 공제 : (결제금액 / 30일) × 이용일</p> <p>③ <u>이용료 반환은 회원본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하여야 하며,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야 한다. 단,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리인 신청 시는 <u>해당 회원의 신분증, 통장사본, 회원카드,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</u> 신청한다.</p> <p>④ 강습종료일 15일 미만은 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</p> <p>⑤ 반환금은 은행계좌 입금이며, 신청일로부터 <u>약 30일 이내</u>에 지불한다.</p>	<p>지참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 1항 제 3호의 경우 강습종료일 15일 미만은 이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</p> <p>⑤ 수영장은 반환금을 회원 본인명의 은행계좌에 신청일로부터 <u>운영일 기준 10일 이내</u>에 지불한다. 단, 어린이회원은 등본 상 보호자의 통장계좌에 지불할 수 있다.</p>
<p>제 15조(연기)</p> <p>① 회원은 개인사정으로 이용에 대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일 연기는 다음과 같다.</p> <p> 가. 공급원수 단수에 의해 임시휴장 시 휴장일수 연기</p> <p> 나. 질병에 의한 수술, 입원, 통원치료사 연기</p> <p> 다. 장기출장, 해외여행 등으로 연기</p> <p>② <u>연기는 3개월 등록자에 한해 연기할 수 있으며, 연기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 연기와 연기 후 환불은 할 수 없다.</u></p>	<p>제 8조(연기)</p> <p>① <u>회원은 3개월 단위마다 1회에 한하여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. 단, 단위기간 산정에 있어서 연기신청으로 인해 정지된 기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.<신설></u></p> <p>② <u>연기신청은 소요기간이 최소 5일 이상이고, 연기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이용기간 연기는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 직접 체육센터를 방문하여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인 신청 시는 해당 회원의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신청한다.</p>	<p>③ 연기는 회원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,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야 한다. 단,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야 한다.</p>
<p>제 16조(운영시간)</p> <p>① 망마국민체육센터(수영장)의 운영시간은 평일 06:00부터 폐장은 21:00, 토요일은 09:00부터 18: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, 이에대한 사항은 적용일 15일 이전에 별도 게시한다.</p> <p>② 망마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의 정기휴관은 <u>매주 일요일, 법정공휴일(명절포함)로 한다.</u></p> <p>④ 망마국민체육센터는 다음의 경우에 임시휴관을 할 수 있으며, 그 기간 및 사유를 <u>게시 또는 문자 공지한다.</u></p> <p>가. 천재지변(태풍, 폭우 등) 인명피해가 예상될 경우</p> <p>나. 수도관 공사 등 수도물 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</p> <p>다. 시설의 보수, 보강,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</p>	<p>제 9조(수영장 운영시간)</p> <p>① 수영장 운영시간은 평일 06:00부터 폐장은 20:20, 토요일은 09:00부터 17:30까지이다.</p> <p>② 정기휴장은 <u>법정 공휴일 및 대체휴무일, 근로자의 날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수영장은 다음의 경우에 임시휴장을 할 수 있으며, 그 기간 및 사유를 홈페이지 및 현장에 <u>게시 및 문자메시지로 공지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. 체육대회 개최 등 공식행사 개최 3. 시설의 보수, 보강,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

현행	개정안
<p>제 8조(회원의 자격제한)</p> <p>3. 만7세미만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 동반 시 입장이 가능하다</p> <p>4. 만4세 이상 어린이는 남·여 탈의실을 구분하여 입장하여야 한다.</p>	<p>제 10조(이용자 준수사항)</p> <p>시설 이용 시 지켜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이용자는 체육센터에서 지정한 실내수영장용 규정 수영복 및 수영모, 수영안경을 반드시 착용하고 이용하여야 한다.<신설></p> <p>2. 이용자는 수영장 이용 후 샤워실, 락커룸 등에 개인 샤워용품을 보관해서는 안 되며 퇴실 시 본인이 직접 가져가야 한다.<신설></p> <p>3. 여성회원으로서 생리기간인 경우에는 수영장 사용을 자제한다.<신설></p> <p>4. 만6세 이하 미취학아동은 보호자 동반 시 입장이 가능하다.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만3세 미만의 어린이와 동반 입장할 경우 방수 기저귀를 필히 착용 후 입장하여야 하며, 이에 불응 시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.<신설></p> <p>7. 만12세 이하 초등학생이 경영풀 자유수영 입장을 원할 경우에는 깊은 수심에 따른 안전상 문제로 보호자(가족,선생님,인솔자)가 동반 입장하여 이용하여야 한다.<신설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 12조(강습)</p> <p>⑦ 수영장내 강습 또는 자유수영시 강사의 지도(안전)에 따르며, 수영에 필요한 개인 휴대물품, 음식물(커피, 과자 등)등 반입은 일체 금한다.</p> <p>⑨ 회원은 수영 중 본인이 신체에 이상 징후를 느끼거나, 급격한 변화가 있을 시 즉각 수영을 중단하고 <u>지도강사 또는 관리사무실에</u> 통보한다.</p>	<p>8. 수영장 내부로는 외부음식물을 절대 반입할 수 없다.</p> <p>9. 수영 중 신체에 이상 징후를 느끼거나, 급격한 변화가 있을 시 즉각 수영을 중단하고 수영강사 또는 안전강사에게 통보해야한다.</p>
<p>제 8조(회원의 자격제한)</p> <p>5. 장내질서와 타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한다.</p> <p>가. <u>취중에 있는 자와 시설 내 소란과 타인에게</u> <u>위해의 염려가 되는 자</u>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6. 기타 체육센터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의 출입제한 또는 회원자격이 박탈된 자</p>	<p>제 11조(출입제한 및 회원자격 박탈)</p> <p>① 다음의 경우는 수영장 출입을 제한한다.</p> <p>1. <u>취중에 있는 자와 시설 내 소란과</u> <u>위해가 염려되는 자</u></p> <p>2. 용변의 배설이 불편하여 상습적으로 경영품, 샤워장, 탈의실, 화장실 바닥에 용변을 배출하는 자<신설></p> <p>3.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강제 퇴장시키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나. 심실질환이나 전염성질환 또는 문신 등으로 타 회원에게 혐오감을 느끼게하는 부적합자</p> <p>다. 기타 광범위한 피부질환, 건강상 강습이 불가능한 자로 판단될 경우</p>	<p>1. 화장물을 지우지 않았거나 오일, 염색약을 바른 경우<신설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본인 강습시간이 아닌, 타 강습시간에 들어간 경우(초급오전반→초급저녁반, 자유수영→초급새벽반 등등)<신설></p> <p>5. 수영장 허가 없이 개인이 임의대로 단체 강습 또는 수영지도를 하는 자<신설></p> <p>6. 타인에게 특정 영법, 수모, 행동 등을 강요하거나 타인의 수영을 방해하는 자 <신설></p> <p>7. 수영장에서 클럽활동을 하는 자<신설></p> <p>8. 체육센터 이용자 상호간의 상행위 또는 금전거출 행위를 하는 자<신설></p> <p>9. 기타 수영장사 또는 안전근무자의 지시에 불응한 자<신설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 20조(개인사물함)</p> <p>① 당 체육센터는 개인 사물함 사용자에게 <u>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으며, 이때 개인 사물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보증금을 반환한다.</u></p> <p>⑤ 락커룸 옷장 열쇠를 분실한 경우 교체 비용 10,000원을 체육센터에 지불하여야 한다.</p> <p>⑥ 개인사물함은 이용 <u>종료 시 즉시 열쇠를 반환하고 종료 날로부터 1개월 초과 시부터 내용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보증금은 개인사물함 사용기간 만료 시 보증금의 반환은 다음과 같다.</p> <p>2. 사용기간 만료 후 1개월 초과는 열쇠 분실 등으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 <u>보증금은 열쇠못치 교환비용으로 대체한다.</u></p>	<p>제 12조(개인사물함)</p> <p>① 회원은 체육센터 내 설치된 개인사물함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체육센터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.<신설></p> <p>② 체육센터 내 신청을 허가할 때 체육센터는 <u>보증금(10,000원)을 예치시킨 후</u> 개인사물함 열쇠를 교부한다.</p> <p>③ 회원이 개인사물함 열쇠를 분실한 경우 즉시 이를 체육센터에 알려야 하며, 열쇠 교체 비용 10,000원은 분실자가 부담한다.</p> <p>④ 회원이 개인사물함 사용을 종료하거나 <u>회원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체육센터에 열쇠를 반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체육센터는 제 3항에 의거 회원으로부터 열쇠를 반환받은 경우 제 2항에 의거 예치되어 있는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, 이 때 보증금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반환하지 않는다.<신설></p> <p>⑥ 회원자격 상실 후 1개월 이내에 열쇠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체육센터는 제2항에 의해 예치된 보증금을 공제하고, 보관함 내 물건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 24조(시설이용)</p> <p>⑩ 이용 중 시설물을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해 파손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배상하여야 한다.</p> <p>제 5조(권리와 의무)</p> <p>③ <u>사용자의</u> 귀중품 또는 개인 휴대용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본인 관리에 있으며 만약 분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 시설이 책임질 수 없다</p> <p>⑤ 락커룸 옷장 열쇠를 <u>분실한 경우</u> 교체비용 10,000원을 체육센터에 지불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체육센터 건물 내 시설물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, 체육센터는 그 손해를 <u>배상한다</u>.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부주의, 지병,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⑤ 시설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 체육센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</p> <p>⑥ 배상의 범위는 여수시 영조물 배상 책임에 근거한다.</p> <p>제 22조 (개방)</p> <p>② <u>망마국민체육센터(수영장)의</u> 운영시간</p>	<p>제 13조(손해배상)</p> <p>① 체육센터 내 본인 부주의에 따른 시설물 파손, 훼손 등은 행위자가 배상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회원의</u> 귀중품 또는 개인 휴대용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본인 관리에 있으며 만약 분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 시설이 책임질 수 없다. 단, 귀중품의 경우 안내데스크에 보관 가능하다.</p> <p>③ <u>개인사물함</u>, 락커룸 옷장의 열쇠를 <u>분실 및 파손한 경우</u> 교체비용 10,000원은 분실자가 부담한다.</p> <p>④ 체육센터 건물 내 시설물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, 체육센터는 그 손해를 <u>배상 할 수 있다</u>.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부주의, 지병,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 22조 (개방)</p> <p>② <u>망마국민체육센터(수영장)의</u> 운영시간</p>	<p>제 14조(개방)</p> <p>① <u>다목적체육관</u>의 운영시간은 평일 06:00</p>

현행	개정안
<p>은 평일 06:00부터 <u>폐장은 21:00</u>, 토요일 및 공휴일은 09:00부터 18: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사항은 적용일 15일 이전에 별도 게시한다. 단, 명절 연휴(설, 추석)는 휴관한다.</p>	<p>부터 22:00까지, 토요일 및 공휴일은 09:00부터 18:00까지이다.</p> <p>② 다목적체육관의 정기휴장은 명절 연휴(설, 추석)로 한다.</p> <p>③ 임시휴장은 제 9조 제 3항을 준용한다.</p> <p><신설></p>
<p>제 22조(개방)</p> <p>1. 다목적 체육관의 이용은 일일 2시간 이내 연습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체육관 시설운영상 단체 또는 개인 전용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제 24조(시설이용)</p> <p>④ 다목적 체육관은 실내 전용 운동화 를 착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⑥ 지정된 이용시간을 초과하거나 배정된 코트 이외의 사용을 금한다.</p> <p>⑨ 다목적 체육관 이용 중 개인 휴대물품의 분실에 대해서 체육센터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.</p> <p>⑦ 다목적체육관 내에서는 일체의 강습 행위를 할 수 없다. 단, 운영자의 허가를</p>	<p>제 15조(시설이용 및 준수사항)</p> <p>다목적체육관의 시설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다목적체육관의 이용은 일일 2시간이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체육관 시설 운영상 단체 또는 개인전용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2. 다목적체육관은 실내 전용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한다.</p> <p>3. 지정된 이용시간을 초과하거나 배정된 코트 이외의 사용을 금한다.</p> <p>4. 다목적체육관 이용 중 개인 휴대물품의 분실에 대해서 체육센터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.</p> <p>5. 다목적체육관 내에서는 일체의 강습 행위를 할 수 없다. 단, 관리주체의 허가를</p>

현행	개정안
<p>특한 생활체육무료교실 목적의 강습행위는 <u>제외한다</u>.</p>	<p>받은 생활체육 무료교실 목적의 강습행위는 <u>가능하다</u>.</p>
<p>제 21조(보관품의 처리) 보관함, 락커룸, 샤워실 등 체육센터내의 개인 분실물에 대해서는 <u>3개월이 경과한 물품</u>에 대해서는 체육센터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.</p>	<p>제 16조(분실물) 락커룸, 샤워실 등 체육센터 내의 <u>회원 식별이 불가능한 개인 분실물</u>은 분실물 보관대에 <u>일괄 비치하며</u>, 비치 후 찾아가지 않고 <u>1개월이 경과한 물품</u>에 대해서는 수영장에서 임의 처분할 수 있다.</p>
<p>제 25조(고지) <u>망마체육센터</u>는 본 이용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데스크 비치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 17조(고지) 체육센터는 본 이용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데스크 비치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</p>
<p>제 26조(기타) 본 이용수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<u>체육시설관리조례</u> 등 관계법령과 신의와 성실의 이용관행을 고려, 체육센터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.</p>	<p>제 18조(기타) 본 이용수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<u>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</u> 등 관계법령 및 신의와 성실의 이용관행을 고려, 체육센터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이용수칙의 효력 및 변경)</p> <p>① 본 이용수칙은 홈페이지 게재 또는 안내 데스크에 약식 게시하거나 인쇄물을 통해 배포 또는 구두설명으로 효력을 발생한다.</p> <p>② 체육센터는 필요한 경우 본 수칙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수칙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.</p> <p>③ <u>사용자</u>는 변경된 이용수칙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이용수칙 효력 발생일 이후의 지속적인 이용 시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</p>	<p>제 19조(이용수칙의 효력 및 변경)</p> <p>① 본 이용수칙은 홈페이지 게재 또는 안내 데스크에 약식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이용자</u>는 변경된 이용수칙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효력 발생일 이후의 지속적인 이용 시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) 본 이용수칙은 2012. 5 . . 부터 시행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) 본 이용수칙은 2020. 06. 00. 부터 시행한다.</p>